

“環境稅”를 반대한다

22일(10월) 환경처의 국정감사에서 환경처 장관은 현재 <폐기물예치금><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가금을 環境稅라는 이름의 목적세로 통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環境稅의 필요성에 대해서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지배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環境稅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히 생태계 보호나 환경의 질 개선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까지,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의 대처를 위해서는 環境稅라는 이름의 목적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언뜻 듣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稅金같이 보이나,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총체적인 측면의 국가경제 살리기라기보다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소홀했던 기업살리기와 환경보호라는 대전제를 빙자한 또 하나의 稅金 신설 그리고 안이한 행정편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환경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 보다, 환경보호를 빙자한 나쁜 일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짜 환경보호인지? 언뜻 구별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환경보호를 빙자한 나쁜 일들이 좋은 일에 비해, 더 튼튼하고 강력하게 환경보호라는 대전제를 무기로 삼아 설치기 때문에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진짜

환경보호=돈을 벌기 위한 수단, 환경보호=공갈의 대명사, 환경보호=반정부 운동의 구호 등이 될까 보아 겁이 난다.

그 심한 예를 몇 가지 본다.

1970년대 말, 필자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한강의 수질오염을 걱정해, 서울시에 수질보호를 위한 대책 하나를 제시했다.

즉, 물은 일단 쓰면, 아무리 깨끗하게 쓴 물이라고 해도 다시 원래의 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원래의 깨끗한 물로 100% 환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 또 하나의 문제점(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과 오염된 물을 다시 정수하는 과정의 클로르포름의 생성 등)을 제기한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막는 최선의 길은 물을 덜 사용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에는, 낭비하는 사람을 가리켜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할 정도로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베릇이 있다.

이런 베릇을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아끼고 절약하도록 하는 계몽과 교육이 중요하나, 그럴 시간이 없다. 따라서 물을 덜 쓰도록하는 선의의 강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돈을 좋아하고 무서워하니까, 돈으로 물을 낭비하는 베릇을 고쳐야 하겠다. 즉, 물을 쓰고 버릴때도 그 버리는 물에 돈을 물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작업이 下水稅였다. 필자는 이 下水稅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분명히 할 것을 다짐 받았다.

첫째, 下水稅는 환경보호 특히, 수질보호를 위해 물 사용의 양을 줄여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계몽

과 경각심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下水稅는 目的稅가 아닌 부가세의 성격이어야 한다.

둘째, 下水稅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사용의 예와 같이 下水道에 버리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야(식수나 다른 이용으로 하수가 되지 않는 경우)하겠지만, 당장 전국적으로 하수도에 계량기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계량기를 부착할때까지) 수돗물 사용량에 준해, 下水稅를 징수한다.

셋째, 下水稅는 물을 덜 쓰도록 하는 계몽적 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절대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는 안되며, 징수된 下水稅는 下水道의 개선과 시설확충 그리고 하수처리 등의 수질 보호 사업에만 쓰여야 한다.

等等의 제시를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돈(稅金)보다는 수질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될)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행정작업을 거쳐 들어난 下水稅의 모습은 필자가 생각하고 권유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였다.

이름도 수질보호를 위한 下水稅가 아니라, 〈下水道使用料〉라는 엉뚱한 것이 되었고, 부가금이 아닌 目的稅가 되었으며, 세금의 액수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하수도 사용료로 물어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수질보호 때문에, 물을 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필자의 권유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稅金을 부담시키는 좋은 구실이 되고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환경처가 추진하고 있는 環境稅도 행정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앞서의 하수도 사용료와 같이 환경보호는 구실이고, 어떻게든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도 환경보호를 빙자한 허울 좋은 稅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저러 하니까, 환경보호를 위하여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니 할 수 없이 세금을 물고 있지, 조금만 그 내막(오염의 원인과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히 생태계 보호나 환경의 질 개선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까지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의 대처를 위해서는 環境稅라는 이름의 목적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언뜻 듣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稅金같이 보이나, 총체적인 측면의 국가경제 살리기라기보다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소홀했던 기업살리기와 환경보호라는 대전제를 빙자한 또 하나의 稅金 신설이라고 생각된다.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등)을 알면, 그리고 모두가 단합하여 못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TV수신료〉라는 이름의 TV시청료 보다 더 어거지 일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TV시청료의 경우, TV가 있건 없건,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KBS TV를 보건 말건(실제로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이, KBS TV를 안보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도, 조정되기가 힘들다)간에 〈통합공과금〉이라는 데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와 함께 TV수신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TV수신료만 따로 떼어 안 낼수가 (그걸 노린 것이라는 말도 있다)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도 공장을 가동하는한, 안 낼수가 없는 官의 명령 세금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랴……

환경보호가 절대의 가치인 것 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라는 전제가 모든 것을 우선, 우월하는 힘이거나 면죄부일 수는 없다. 아무리 환경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지언정, 환경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환경보호는 사람의 일상과 상식을 초월하는 권위나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최근 우리 주변에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권위와 힘이 난무하고 있다.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일부 활자매체중 환경보호를 내세워 기업을 위협하고 독자를 오도하는 사이비 환경언론이 있는가 하면, 환경보호를 활동목적으로 표방하는 일부 환경단체가 환경보호는 수단일뿐 목적은 무엇인지 모를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조직은 환경보호가 무슨 큰 권리인양, 경찰의 데모 진압용 안전모를 쓰고, 얼룩무늬 전투복 유니폼을 받쳐 입고, 비상 라이트를 단 봉고차를 몰고 분주하게 거리를 질주하는 과시용 환경보호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환경보호인가? 이런 한심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과 같이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추진되는 환경처의 環境稅의 신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 環境稅라는 것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까

지 함께 싸잡아, 저 유명한 논리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라는 근거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人頭稅(주민세)를 물리려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보다 더 무섭고 한심한 환경처의 무사안일,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하수처리장을 짓고,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자에게 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언듯 보기에는 정당하고,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모두 원인자인가? 원인자로 강요 받은 피해자는 아닌가? 그리고 그 대책 비용을 우리가 꼭 물어야 하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지금, 우리는 이름만 다를뿐 環境稅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세금을 열심히 바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말할 것도 없고 〈하수도 사용료〉와 〈일반폐기물 수수료〉에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별의 별 이름의 환경관련 세금을 물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처는 環境稅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또 하나의 세금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 말인즉, 앞서의 〈폐기물예치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의 부가금을 통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수도 사용료〉와 〈일반폐기물 수수료〉에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도 모두 環境稅로 묶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환경보호를 빙자한 또 하나의 세금 부담이 될 環境稅라는 이름의 목적세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이런저런 평계로 만들어 놓은 각종 세금에 깔려, 기업(영세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국민(돈도 권력도 없는 서민)은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환경보호가 중요한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처가 앞장 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도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만들어야 겠다면, 다음과 같은 손쉬운 방법은 어떤가?

—책상에 앉아, 국정감사 뉴스거리로 環境稅나 생각해 보는 환경처라면, 업무에 비해 사람의 수가 너무 많다. (필자가 알기로는 실제로, 환경처의 공무원 중

**環境稅！언듯,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아이디어는 환경처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즉흥적 제시였다는 증거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環境稅를 이야기한 장관이 “環境稅의 부과 대상 및
부과액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어 이를
시일내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실토했던 점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에서 바쁜 사람은 1인 3~4역을 해야 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바쁘고, 한가한 사람은 신문이나 뒤적이고 잡담이나 하려고 출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무척 한가하다.)

따라서, 현재의 3분의 1인원으로도 충분히 환경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인건비로 환경처가 생각하는 環境稅 목적에 보태면 된다.

－창사가 너무 크다. 장관실에서부터 기자실에 이르기까지 방의 크기를 축소해야 한다. 장관실의 경우, 넓은 집무실과 접견실 그리고 비서실로 나뉘어 있는데, 환경보호를 하는데는 비밀이 필요 없고, 권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접무실 하나로 접무도 하고, 손님도 만나고, 비서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따로, 비서가 있는 국장방을 독립시킬 필요도 없다. 한방에 국장, 과장, 계장, 직원이 모두 앉아 오손도손 일하는 것이 능률면이나 친화면에서 훨씬 좋다.

그렇게 하여 남는 3~4층은 세를 주어 그 수입으로 환경처가 생각하는 環境稅 목적에 보태면 된다.

－지방자치에 따라, 지도 단속 업무를 빼앗긴 지방 환경청은 그야말로, 닦(오염) 쓱던 뭐가 지붕(환경보호) 쳐다 보는 격이 되었다. 이 기회에 전국 6개 지청을 아파트로 개조해 환경처가 생각하는 環境稅 목적에 보태면 된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강구하면 환경처가 생각하는 環境稅 목적에 보탬이 되는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모자라면,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환경처 공무원 답게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환경처가 생각하는 環境稅 목적에 보태면 된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아니, 환경처가 이렇게 환경보호를 위한 돈 마련에 앞장서면, 많은 환경단체

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범국민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조성 운동을 전개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설지도 모른다는 꿈 같은 생각에서 해 보는 소리다.

環境稅！

언듯,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아이디어는 환경처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즉흥적 제시였다는 증거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環境稅를 이야기한 장관이 “環境稅의 부과 대상 및 부과액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어 이를 시일내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실토했던 점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환경稅의 타당성,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 조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環境稅를 물리겠다는 식의 뉴스성 발언을 해야 할 정도로 환경처는 무사안일한가?

결론적으로 권유한다면, “환경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도 없고, 검토해서도 안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環境稅라는, 언듯 그럴듯해 보이는 아이디어에 자가당착되어,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제발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그 공청회에 참여할 사람은 환경처의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찬성하는 어용 환경관련人士들만으로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둔다.

환경보호는 결코, 부담이나 강제여서는 안된다. 환경보호는 사랑과 용서의 인식에서 출발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筆者：本會顧問 / UNEP 글로벌 500委員〉